

대통령령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

별표 2 제1호 차목(종전의 자목) 중 “아목까지의”를 “자목까지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(제12조제2항 관련)

1. 공통 업무

가. 정신재활시설의 운영

나.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,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

다.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

라.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

마.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

바.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

사. 정신질환자등의 사회 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

아.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

자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

차.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

2. 개별 업무

가. 정신건강임상심리사

1)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

2)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

나. 정신건강간호사

1)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 활동

2)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

다. 정신건강사회복지사

1)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

2)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·안내

라. 정신건강작업치료사

1)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,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

2)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·수행

현행	개정안
[별표2]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1. 공통업무 가. ~ 아. < 생략 >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	[별표2]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1. 공통업무 가. ~ 파. < 현행과 같음 > 자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</u> <u>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(신설)</u> 차.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